



## 하도급공사 현장기술자 기능계기술자로 대체해야

박진관 / (주) 국제기공 기술부 차장

전국의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수는 대한설비공사협회 소속 회원사총 2,866개 업체를 비롯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총 14,713개 업체등 총 22, 455개(95년 1월 현재)에 달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면허기준인 기술자격의 기준은 기술계인 기사 2급이상 1인, 기능계인 기능사 자격 취득자 2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자격자는 총 25,321명, 기능자격자는 총 50,642명이다.

하도급 공사의 경우 건설업법 제33조와 건설업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현장 기술자를 배치토록 되어 있다.

건설기술자들이 하도급업체의 근무를 꺼리고 있는 전문건설업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기사

자격 소지자를 구하기가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 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책임감리제 시행으로 인해 건설기술자들이 감리업체로 몰려가는 바람에 일반 건설업체에서도 건설기술자를 구하기 힘든 마당에서 전문건설업체가 건설기술자를 구하여 현장기술자로 배치하기란 매우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체가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 하기 위해서는 일반건설업체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어 가면서 기술자를 스카웃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들어 설비업계를 비롯한 전문건설업계는 신규업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과당경쟁 및 인건비 과다 지출로 인해 부도 업체가 다량으로 발생되고 있어 경영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건설업 공사의 경우 기능계 자격소지자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건설업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자가 시행하는 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락이 있는 경우에는 기능계 자격 소지자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미장, 방수, 조적 등 일부 종목에만 제한되어 있어 다른 전문업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일반 건설업체에서 각 분야별로 현장기술자가 배치가 되어 있고, 감리업체에서 기술자격 내지는 학력 경력에 의한 감리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도급 공사의 현장기술자를 기술계 자격 소지자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기능계 자격 소지자의 자격 등급에 따라 현장

기술자로 인정해 줄때 그 기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건설업계는 공사금액에 따라 자격 등급에 맞추어 현장기술자를 배치함에 따라 등급이 높은 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부단한 자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반면, 건설 기능계 자격의 경우 등급 및 자격 응시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등급별로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기업주는 기업주대로 기능자격 취득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현장배치 기술자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능인들은 기능인들대로 더 높은 등급의 자격을 취득하여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실정 때문에 현시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에 관련된 기능자격 취득자의 자격등급 구분은 기능사보, 기능사2급, 기능사1급, 기능장 등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기능사보의 경우 간단한 실기 검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기준에는 기능사보의 자격이 박사, 기술사와 동일한 자격을 갖는 기능장과 법적으로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기능계 자격 취득자의 자격 취득과정과 기술계 자격 취득자의 자격취득 과정을 잘 비교분석하여 기능계 자격취득자도 기술계 자격 취득자와 동등하게 현장배치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 기능인의 사기 진작은 물론 나아가 기술수준 향상 및 건설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실시공을 영원히 추방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될 것이다.

학력과 경력만으로도 인정 건설기술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동안 정부나 관계 당국에서 소홀히 생각했던 건설기능인들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